

수원고등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나12093 판결 [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나12093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. 30 선고 2018가합10330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
담당변호사 방지훈, 채휘진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

변론 종결 2020. 11. 19

판결선 고 2020. 12. 17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. 30. 선고 2018가합1033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9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0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8쪽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『 3) 이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"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을 835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

다만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B(이하 방이라 한다) 사이에 신 건물 공사도급계약상 원고의 지위를 피고가 2018. 3.31.자 건물매매계약서특약서(갑 제5호증,이하 '이 사건 특약서'라 한다)에 기하여 인수하였으므로,피고는 B에게 원고가 B에게 부담하던 73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을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915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. ”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을 제21,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B은 신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를 위해 신건물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4,000,000원을 선고받았는데, 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B은 '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공사를 다해줬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/는 취지로 진술한사실, 피고의 친오빠인 K이 이 법원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

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위 2)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특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, 원고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, 당시에 이르러 이 사건 특약서에 기해 원고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점, ② 제1심 증인 G은 이 사건 특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라고 증언한 점,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주었는데, 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합계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인 915,000,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위 2)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상기판사 김여경판사 허 승